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년 6월 7일 박배원의원의외 1인

나. 회부일자 : 2005년 6월 7일

다. 상정일자 : 2005년 6월 7일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생략(서면)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2005. 1. 27공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
기 제한규정을 삭제)됨에 따라

-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회기제한 규정(제3조)를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당기는 등 한참 더위기간인 초복시기와 휴가철 등을 피하여 개최하고,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명확히 함.

라.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3.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춘배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전체를 삭제하면, 정례회 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 제4조(집회)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일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일자 등도 개정하면 한참 더위기간인 초복시기와 휴가철 등을 피하고 또한 총선거 실시연도의 제1차 정례회 시기조정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생략

8. 기타필요한사항 : 생략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명 :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 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 19조의 4의 규정 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3일 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 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에 집회한다.(개정2001.11.14)	제명 : 구미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회기) (삭제) 제4조(집회) ----- -----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 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지방선 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 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2.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개정후)]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2000.05.24 조례제0417호

개 정 2001.11.14 조례제04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삭제>

제4조(집회) 영 제 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일에 개최한다.(개정2001.11.1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개정2001.11.14)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01.11.14)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 6일로 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

부 칙 <2005.0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